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1	지원대상	자 가구	세대주	인전시	.항
	기면케증	^	711111	그ㅋ~	e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	

- 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
- ※ 유의사항 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세대주와 의 관 계	동의자 성 명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),2)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	

- 1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 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·특별시교육감·광역시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도교육감·특별자치도교육감(관련법에 따른 위 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, 이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 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 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 (만일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. 단,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「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」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.)
- 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뒷면 참조
- 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: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(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.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
- 5. 정보제공 목적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,「기초연금법」,「장애인연금법」,「긴급복지지원법」,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아이돌봄지원법」,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

• 신용정보집중기관장

금융기관 등의 명칭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
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- 6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 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- 9)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0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- 1. 금융정보
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, 3개월 입금액 총액^{*} *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
- 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-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
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가액
- 5)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- 2. 신용정보
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3. 보험정보
- 1) 보험증권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- 2) 연금보험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 의 사 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**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・기피할 경우**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2조제8항,「기 초연금법」제11조제4항,「장애인연금법」제9조제8항,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「주거급여법」제14조,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24조제3항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동의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5조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1조,「기초연금법」제10조,「장애인연금법」제8조 및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1조,「장애인복지법」제50조의2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5,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2항,「주거급여법」제9조에 따라 **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**
 - 향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3조 및「기초연금법」제11조제2항,「장애인연금법」제11조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**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**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「기초연금법」제12조제6항,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13조제7항 및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3,「장애인복지법」제50조의3제6항,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제15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6,「주거급여법」제15조제6항에 따라 **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**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있습니다.